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7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9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9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57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62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62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6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 년 2 월 28 일

회 사 명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찬구, 김성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시그니처타워스 서울)
(전 화) 02-6961-1114
(홈페이지) <http://www.kkp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임원 (성 명) 김민호
(전 화) 02-6961-116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0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0기 (2016. 1. 1 ~ 2016.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17일 (金) 09: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명동1가) 서울 YWCA 4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계열회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 자금대여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0기(2016. 1. 1 ~ 2016.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5. 배당 내역

1주당 예정 배당액 : 보통주 최대주주 750원/기타주주 800원, 우선주 850원

6.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용만 (출석률:80%)	정진호 (출석률:90%)	송옥열 (출석률:90%)	장명기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16.02.04	· 제39기(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39기(2015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금호티앤엘 주식(남해화학 보유) 매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16.03.02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중국합자사(일조금호금마화학유한공사) 지급보증 승인의 건 · 중국합자사(금호석화심양유한공사) 지급보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16.03.18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임원급여 기본인상을 승인의 건 · 계열회사(금호티앤엘(주))와의 발전소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 승인의 건 · 신규 일반대출 약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불참)	찬성
4	2016.04.05	·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금호피앤비화학㈜)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금호티앤엘㈜)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16.06.17	· 금호석유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 연간 커미션 지급 계약 승인의 건 · 계열회사(금호폴리켐㈜)와의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의 건 · 계열회사(금호폴리켐㈜)와의 부동산 임대 계약 연장 승인의 건 · 수입자금대출 차입한도 약정 승인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6	2016.08.23	· 계열회사(금호티앤엘㈜)와의 용역 계약 변경 승인의 건 · 여수 제3에너지 시설대 차입 약정 승인의 건 · 제147회 사모사채(FRN) 발행 승인의 건 · 중국합자사(남경금포금호화학유한공사) 지급보증 승인의 건 · 계열회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신규태양광사업 지분인수(㈜강원대학교대양광) 자금대 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16.10.20	· 계열회사(금호티앤엘㈜)와의 Coal 하역/운송 단가 조정 및 내륙운송 계약 승인의 건 · 계열회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출자 승인의 건 · 그룹사 IT 운영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갱신 승인의 건 · 제148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 제149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16.10.31	·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불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16.11.22	· 일반대출(국민은행 300억원) 연장 승인의 건 · 계열회사(금호미쓰이화학㈜)와의 부동산 임대 계약 승인의 건	(불참)	찬성	찬성	찬성
10	2016.12.14	· 차입금 재약정 및 금융조건 재조정 승인의 건 · 투자유가증권(㈜대우건설) 처분 예정일자 연장 승인의 건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정진호 사외이사 : 2016년 3월 18일자 재선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용만, 정진호	2016.02.04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원안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6,000,000,000	192,000,000	48,000,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2016. 3.18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정진호)를 포함한 인원수 및 보수한도 총액임

※ 상기 지급총액 및 평균지급액은 재선임된 사외이사(정진호)의 보수 포함 금액임

※ 상기 지급총액 및 평균지급액은 2016년 12월말 기준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합성고무부문]

합성고무산업이란 천연고무와 유사한 성상을 지니는 합성고무상 물질 또는 고무상 탄성체가 될 수 있는 가소성 물질인 합성고무를 이용하여 타이어, 신발, 기타산업용 고무제품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후방산업부문으로는 정유산업 등이 있으며 전방산업부문으로는 타이어, 신발 제조산업 등이 있습니다.

[합성수지부문]

합성고분자물질의 총칭인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소위 플라스틱, 스티로폼등의 주원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전방산업으로는 주로 가전, 자동차의 플라스틱 소재 산업 등이 있으며, 합성고무와 더불어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제품의 복합화,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인해 첨단의 기술과 고객의 다양한 Needs 충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술서비스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범용위주의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밀화학부문]

최대 수요처는 타이어 업계와 합성고무 업계, 고무부품 업계이며, 주로 자동차 업계의 경기동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소재부문]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에 필요로 하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으로 반도체용 재료인 ArF 포토레지스트, 반사방지막(BARC), 광산발생제(PAG)와 코팅제 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와 평판디스플레이 화면의 대형화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화학적 특성이 지속적으로 고기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자재부문]

건자재 사업부문은 건축용 및 인테리어용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 부문으로 샷시,도어 등의 창호제품군과 바닥재, 벽지 및 벽장재, 욕실용 자재 등의 내장재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는 전통적인 소재인 나무, 돌 등의 소재에서 탈피하여 범용 소재인 PVC, ABS 등의 합성수지를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서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천연소재와 합성소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외관의 향상 및 기능성의 향상 등 복합화 고기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사업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주택, 빌라, 타운하우스 등) 및 상업용 빌딩(오피스, 사옥, 관공서 등) 건설 산업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부문]

열병합발전의 고효율의 에너지설비로 화석연료를 열·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열에너지는 지역난방 및 산업체 공정용으로 사용되며, 전기에너지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페놀유도체부문]

PHENOL, ACETONE은 나프타분해에서 나오는 벤젠 및 프로필렌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산업용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며, 동 제품은 건축 전자산업의 주요소재가 되는 PHENOL수지, 도료, 용해제, 약품등 광범위한 산업원료가 되며, BPA,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POXY수지, MIBK 및 정밀화학으로 연결되는 화학공업의 소재로서 과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항만운영부문]

상시적인 전력소비량 증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유연탄 소비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의 하역 등의 업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은 매출액 31,386억원(전년 대비 0.7% 감소), 영업이익 1,333억원(전년 대비 7.7%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3분기까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에 따른 판매 가격 약세가 지속되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구분	매출유형	주요 제품	매출액비중
합성고무	제품	SBR, BR, NBR, LATEX 등	49.7%
합성수지	제품	PS, ABS, EPS, PPG 등	33.0%
정밀화학	제품	노화방지제, 가황촉진제 등	3.9%
기타	제품, 용역 기타매출	전자소재, 스팀, 임대료 등	13.4%

(2) 시장점유율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합성고무부문]

합성고무의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인도, 유럽, 북미, 중동입니다. 주요 고객은 타이어, 신발, 기타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체이며, 라텍스 제품의 주요 고객은 제지업계와 장갑업체입니다. 관련업계의 성장세와 경기변동, 수출시장의 경기동향뿐만 아니라 대체품 관계에 있는 천연고무의 생산량에 따라 수요의 영향을 받습니다.

[합성수지부문]

합성수지의 주요 시장은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사업입니다.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유럽, 중동, 북미 등이며, 범용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수요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수요변동은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유가변동과 주원재료인 SM가격의 변동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밀화학부문]

주로 전방업체인 타이어업계와 합성고무업계, 고무부품업계 경기의 영향을 받으며, 해외시장의 경우도 주로 자동차업계의 경기동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소재부문]

전자소재제품의 주요 판매시장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이며,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물성이 변경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제품수명이 타 화학제품에 비하여 매우 짧은 편입니다.

[건자재부문]

주요 고객은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와 이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개보수 시장(개인, 인테리어사 등)이 있습니다. 건축시장은 부동산 시장 정책과 맞물려 정부 정책에 의하여 수요 및 트렌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신규 건축시장 및 이사 물량이 증가하게 되어 건자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주거 시장은 각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수출 및 수입은 기타 산업에 비하여 활발하지는 않은 반면, 직접 해외 투자를 통한 로컬화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주나 유럽산의 고급 인테리어 자재들(벽지, 마감재)의 수입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부문]

일반적으로 열병합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권을 통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전기 및 열수용가에 Utility를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역 안에서 계열사 및 외부사에 Utility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놀유도체부문]

PHENOL, ACETONE은 나프타분해에서 나오는 벤젠 및 프로필렌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산업용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며, 동 제품은 건축전자산업의 주요소재가 되는 PHENOL수지, 도료, 용해제, 약품 등 광범위한 산업원료가 되며, BPA,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POXY수지, MIBK 및 정밀화학으로 연결되는 화학공업의 소재로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항만운영부문]

상시적인 전력소비량 증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유연탄 소비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의 하역 등의 업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Synthetic Rubber 및 유관사업의 세계화 전략

당사의 증장기 사업 포트폴리오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 사업의 시장적 근접성, 지리적 경쟁력, 그리고 원료 확보의 용이성 등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및 진출을 위해 기존 사업군과 연관성이 있거나 또는 차별화된 신수종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 진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대표이사

전략 기획	기술기획 본부	관리 본부	영업 본부	중앙 연구소	생산 본부	건자재 사업부
----------	------------	----------	----------	-----------	----------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 . 1. 사업의 개요 "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0(당)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39(전)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0(당)기말		제39(전)기말	
자산				
Ⅰ. 비유동자산		3,290,790,864,116		3,242,979,113,038
유형자산	2,564,778,156,169		2,505,694,027,694	
투자부동산	5,599,829,225		5,601,396,833	
무형자산	17,263,709,625		16,150,523,92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417,770,212,658		395,840,538,203	
매도가능금융자산	231,967,791,293		251,298,280,863	
파생상품자산	2,224,266,454		2,416,566,480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14,562,603,031		16,945,866,321	
이연법인세자산	26,827,588,732		30,213,021,506	
기타비유동자산	9,796,706,929		18,818,891,215	
Ⅱ. 유동자산		1,255,322,771,744		967,576,522,903
재고자산	445,541,869,318		394,695,332,877	
단기매매금융자산	271,36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600,000	
파생상품자산	7,565,550,978		5,924,383,203	
매출채권	520,901,201,497		435,348,394,174	
대여금및기타채권	73,631,749,428		40,853,459,431	
현금및현금성자산	196,976,933,350		47,292,206,726	
기타유동자산	10,430,916,653		15,337,531,60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8,000,000,000	
당기법인세자산	3,190,520		124,614,884	

자산총계		4,546,113,635,860		4,210,555,635,941
자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619,735,715,795		1,556,481,719,280
자본금	167,455,885,000		167,455,885,000	
자본잉여금	266,516,521,179		267,823,855,047	
자본조정	(40,357,800,636)		(40,322,792,17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197,654,012		15,802,276,028	
이익잉여금	1,207,923,456,240		1,145,722,495,381	
Ⅱ. 비지배지분		108,165,015,764		107,267,425,360
자본총계		1,727,900,731,559		1,663,749,144,640
부채				
Ⅰ. 비유동부채		672,652,502,459		1,005,548,523,029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1,545,572,000		50,000,000	
장기미지급비용	3,960,022,759		4,395,546,047	
차입금	559,535,692,271		882,264,646,947	
순확정급여부채	48,749,131,476		64,092,751,937	
이연법인세부채	54,493,414,709		49,318,659,312	
장기금융보증부채	119,820,225		544,808,630	
파생상품부채	807,965,009		1,073,188,204	
기타비유동부채	3,440,884,010		3,808,921,952	
Ⅱ. 유동부채		2,145,560,401,842		1,541,257,968,272
매입채무	373,697,826,690		219,196,675,578	
미지급금및기타채무	220,531,816,757		261,432,200,419	
차입금	1,521,118,869,009		1,032,326,179,387	
미지급법인세	10,669,316,511		13,011,270,326	
충당부채	5,301,910,914		7,326,028,947	
기타유동부채	14,240,661,961		7,965,613,615	
부채총계		2,818,212,904,301		2,546,806,491,301
부채와자본총계		4,546,113,635,860		4,210,555,635,941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4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0(당)기	제39(전)기
Ⅰ. 매출액	3,970,435,496,820	3,934,509,038,268
Ⅱ. 매출원가	3,637,513,282,987	3,600,583,120,599
Ⅲ. 매출총이익	332,922,213,833	333,925,917,669
판매비와관리비	175,845,505,813	169,975,890,128
Ⅳ. 영업이익	157,076,708,020	163,950,027,541

기타수익	96,757,918,251	78,483,007,505
기타비용	101,353,676,283	48,610,752,091
금융수익	37,400,794,334	42,487,884,017
금융비용	104,640,756,311	109,841,535,865
지분법손익	27,636,166,349	43,162,605,092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2,877,154,360	169,631,236,199
법인세비용	32,112,337,003	47,764,892,719
VI. 당기순이익	80,764,817,357	121,866,343,480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73,246,369,844	118,903,528,616
비지배지분순이익	7,518,447,513	2,962,814,864
VII. 주당손익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2,618	4,257
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2,683	4,307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0(당)기	제39(전기)
I. 당기순이익	80,764,817,357	121,866,343,480
II. 기타포괄손익	11,164,132,143	(63,588,893,662)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0,304,690,383	(13,903,309,126)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0,304,690,383	(13,903,309,126)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859,441,760	(49,685,584,53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291,044,033	(48,858,025,829)
해외사업환산손익	(817,744,162)	94,341,274
파생상품평가손익	456,758,251	(580,945,797)
(부의)지분법자본변동	(995,370,439)	454,858,57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924,754,077	(795,812,763)
III. 총포괄이익	91,928,949,500	58,277,449,818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87,066,432,343	56,032,918,558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4,862,517,157	2,244,531,260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15.01.01 (전기초)	167,455,885,000	265,199,404,943	(40,285,386,752)	64,444,842,537	1,102,565,063,870	82,202,263,089	1,641,582,072,687
<총포괄손익>							
전기순이익	-	-	-	-	118,903,528,616	2,962,814,864	121,866,343,48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48,387,290,297)	-	(470,735,532)	(48,858,025,82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97,164,316	-	(202,823,042)	94,341,274
파생상품평가손익	-	-	-	(580,945,797)	-	-	(580,945,797)
지분법자본변동	-	-	-	410,268,011	-	44,590,568	454,858,57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795,812,763)	-	(795,812,763)
재측정요소	-	-	-	-	(13,813,993,528)	(89,315,598)	(13,903,309,126)
<자본에 직접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종속회사 유상증자 참여	-	(14,121,630)	-	-	-	309,098,952	294,977,322
종속회사 신규취득	-	130,093	-	-	-	1,065,223	1,195,316
종속회사 매각	-	-	-	(381,762,742)	(19,137,143,014)	22,516,031,065	2,997,125,309
기타조정	-	2,638,441,641	(37,405,424)	-	-	(5,564,229)	2,595,471,988
연차배당	-	-	-	-	(41,999,147,800)	-	(41,999,147,800)
2015.12.31 (전기말)	167,455,885,000	267,823,855,047	(40,322,792,176)	15,802,276,028	1,145,722,495,381	107,267,425,360	1,663,749,144,640
2016.01.01 (당기초)	167,455,885,000	267,823,855,047	(40,322,792,176)	15,802,276,028	1,145,722,495,381	107,267,425,360	1,663,749,144,64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73,246,369,844	7,518,447,513	80,764,817,35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3,670,425,261	-	(2,379,381,228)	1,291,044,03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881,342,236)	-	63,598,074	(817,744,162)
파생상품평가손익	-	-	-	456,758,251	-	-	456,758,251
지분법자본변동	-	-	-	(850,463,292)	-	(144,907,147)	(995,370,43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924,754,077	-	924,754,077
재측정요소	-	-	-	-	10,499,930,438	(195,240,055)	10,304,690,383
<자본에 직접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종속회사 주식의 추가취득	-	(1,307,307,313)	(23,102,482)	-	-	(3,965,962,960)	(5,296,372,755)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	(26,555)	-	-	-	1,036,207	1,009,652
기타조정	-	-	(11,905,978)	-	-	-	(11,905,978)
연차배당	-	-	-	-	(22,470,093,500)	-	(22,470,093,500)
2016.12.31 (당기말)	167,455,885,000	266,516,521,179	(40,357,800,636)	18,197,654,012	1,207,923,456,240	108,165,015,764	1,727,900,731,559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림 표>

제4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0(당기)	제39(전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6,755,288,897	483,191,768,28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70,541,030,634	568,929,313,015
이자의 수취	1,055,535,024	5,775,901,861
이자의 지급	(63,628,820,847)	(68,303,533,122)

배당금의 수취	14,421,992,640		14,275,660,921	
법인세납부	(25,634,448,554)		(37,485,574,39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0,676,354,366)		(391,346,978,97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3,000,000,000)		(2,5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5,0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5,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1,000,000	
단기대여금의 회수	-		6,000,000,000	
단기대여금의 대여	-		(6,000,000,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286,313,035		9,394,540,888	
장기대여금의 대여	(607,688,660)		(863,605,000)	
유형자산의 취득	(272,707,259,516)		(389,766,987,360)	
유형자산의 처분	1,639,971,307		841,832,057	
무형자산의 취득	(1,647,907,087)		(1,774,235,042)	
무형자산의 처분	120,218,183		202,272,732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7,02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880,0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116,483	
단기매대금융자산의 취득	(251,852,75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6,555,000)		(1,535,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31,335,589,560		4,134,535,96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4,187,279,291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27,755,667		605,022,252	
사업결합및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증감	6,827,781,604		400,063,05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588,279,279		(258,402,443,086)
비지배지분의 유상증자 참여	-		300,000,000	
단기차입금의 순차입(상환)	258,640,324,200		(42,130,040,137)	
사채의 발행	111,705,7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84,480,000,000		330,191,92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10,760,089,996)		(428,609,352,352)	
장기차입금의 상환	(12,269,759,925)		(76,101,330,000)	
배당금의 지급	(22,470,093,500)		(41,998,014,670)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액	(5,686,274,460)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액	1,047,600		-	
종속기업신주발행비	(52,574,640)		(55,625,92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7,512,814		206,983,760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 II + III + IV)		149,684,726,624		(166,350,670,013)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7,292,206,726		213,642,876,739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96,976,933,350		47,292,206,726

- 연결주석사항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실체의 개요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라 함)와 당사가 지배하고 있는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등 9개 종속기업(이하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을 일괄하여 '연결실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 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 박찬구 회장 및 그 특수관계자 등이 지배기업 보통주식의 24.6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으로 넓게 분산되어 소유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	금호피앤비화학(주)	금호페트로홀딩스 유한공사 외 2개사(*1)	금호개발상사(주)	금호티앤엘(주) (*3)	코리아에너지 발전소(주)(*4)	철도솔라(주) (*5)	㈜강원학교 태양광(*6)	
소재지	한국	중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업종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해외투자 지주회사	무역 및 오퍼업등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결산일	12 / 31	12 / 31	12 / 31	12 / 31	12 / 31	12 / 31	12 / 31	
자본	467,689	51,422	33,385	59,475	14,469	743	5,251	
매출액	897,781	4,269	32,642	50,760	3,123	476	866	
당기순이익(손실)	21,043	(14,529)	1,037	6,065	587	20	(181)	
투자주식수	지배지분	22,476,000주	(*2)	1,200,000주	12,835,317주	1,241,400주	139,800주	1,085,000주
	비지배지분	6,266,400주		-	675,543주	50,000주	400주	-
	합계	28,742,400주		1,200,000주	13,510,860주	1,291,400주	140,200주	1,085,000주
지배기업 지분율	78.20%	100.00%	78.20%	95.00%	96.13%	95.85%	96.13%	

(*1) 당기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종속회사인 금호석화심양유한공사 및 금호석유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2)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주식을 미발행하여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당기중 금호티앤엘(주)의 비지배주주 지분 일부를 5,680백만원에 취득하여 지분율이 7.21% 증가하였습니다.

(*4) 당기중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의 유상증자에 6,189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분율이 3.56% 증가하였습니다.

(*5) 당기중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인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가 보유한 철도솔라(주) 주식 200주를 매각하여, 지분율이 0.15% 감소하였습니다.

(*6) 당기중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인 코리아에너지발전소(주)가 ㈜강원학교태양광의 지분 100%를 1,880백만원에 취득한후 동 회사의 유상증자에 4,30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배력 획득 시점 이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기재하였습니다.

(*7) 당기중 금호피앤비화학(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금호알에이시(주)는 서울지방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지배력을 상실하였기에 종속기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여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20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석26 : 법인세비용
- 주석29 : 우발부채
- 주석34 : 대손충당금의 추정

2-3. 회계정책의 변경

2-3-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석공시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관련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지분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소유주에 대한 분배 계획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매각예정(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3-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계약',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 재무제표 확정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일자 지배기업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 17일자 지배기업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2. 연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입니다.

3-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지배력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보유

-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시에는 1) 지배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정도, 2) 지배기업과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3)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4) 과거주주총회에서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배기업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시 1)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2)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3)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상, 4) 다른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지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

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불할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된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되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정산될 때 자본내에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되었습니다.

3-2-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2-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 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잉여금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잉여금에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매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4.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연결실체가 다른 공동약정 참여자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고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공동기업의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지분법 적용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3-5.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연결회사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연결회사 주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불한 대가의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서 처리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한 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6.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

이 있습니다.

3-7.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표시통화로 환산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단,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의 개별기업은 제외)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1)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2)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전반적인 누적환율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3) 위 1), 2)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및 그러한 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차입금 또는 기타 통화상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는 경우, 자본에 인식한 순투자에 대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의 처분손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취득하는 연결실체의 자산·부채로 간주하며, 해당 해외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3-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9.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3-9-1. 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9-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9-3.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9-4.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10.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3-11.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3-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

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10 ~ 60년	차량운반구	5년
건축물	10 ~ 40년	공구와기구	5년
기계장치	8 ~ 30년	비품	4 ~ 5년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채고자산,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취득시점에 이미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는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는 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과, ②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4.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개발비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5.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15-1. 금융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기간비용)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15-2.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15-3.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개시일이나 약정의 재검토 시점에 약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액과 기타 대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리스 부분과 기타 요소 부분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3-1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18.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9.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1.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2.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3.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 종업원급여

3-24-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4-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3.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 없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4-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측정에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6.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7.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가 지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입자본과 관련된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8.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28-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제품과 용역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 판매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3-28-2.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에 따라 지급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총원가를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임대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29.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1-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31-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은 반증이 없는 한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중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3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33. 주당손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7년 3월 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40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39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40 기말		제 39 기말	
자 산				
Ⅰ. 비유동자산		2,463,474,773,565		2,423,348,812,296
유형자산	1,786,488,159,209		1,760,931,788,102	
무형자산	12,814,388,568		11,594,680,629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413,533,873,336		397,662,598,876	
매도가능금융자산	216,050,195,939		207,426,307,509	
파생상품자산	2,224,266,454		2,416,566,480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12,614,960,829		15,143,450,332	
이연법인세자산	18,963,208,190		19,950,698,950	
기타비유동자산	785,721,040		8,222,721,418	
Ⅱ. 유동자산		965,647,793,830		709,846,885,322
재고자산	356,944,596,242		299,457,983,973	
파생상품자산	7,565,550,978		5,924,383,203	
매출채권	384,761,194,948		338,184,979,705	
대여금및기타채권	45,465,640,739		25,920,917,405	
현금및현금성자산	166,412,168,671		2,922,287,22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8,000,000,000	
기타유동자산	4,498,642,252		9,436,333,812	
자 산 총 계		3,429,122,567,395		3,133,195,697,618
자 본				
자본금	167,455,885,000		167,455,885,000	
자본잉여금	276,205,595,328		276,205,595,328	
자본조정	(40,066,241,915)		(40,066,241,91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020,168,065		6,424,029,233	
이익잉여금	815,749,632,216		797,695,720,794	
자 본 총 계		1,236,365,038,694		1,207,714,988,440
부 채				
Ⅰ. 비유동부채		346,552,358,062		625,102,994,860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1,563,201,456		67,629,456	
차입금	309,480,491,106		574,088,439,594	
장기미지급비용	2,868,485,475		3,321,639,638	
순확정급여부채	31,712,394,791		45,795,617,976	
장기금융보증부채	119,820,225		756,479,992	
파생상품부채	807,965,009		1,073,188,204	
Ⅱ. 유동부채		1,846,205,170,639		1,300,377,714,318
매입채무	310,732,758,589		166,342,009,932	
미지급금및기타채무	177,316,167,082		191,078,311,464	
차입금	1,335,675,609,910		918,055,902,377	

미지급법인세	10,146,802,708		12,150,319,759	
총당부채	-		6,474,353,506	
기타유동부채	12,333,832,350		6,276,817,280	
부 채 총 계		2,192,757,528,701		1,925,480,709,17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429,122,567,395		3,133,195,697,618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4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0 기	제 39 기
I. 매출액	3,138,617,263,318	3,159,552,412,488
II. 매출원가	2,858,105,087,251	2,867,846,405,747
III. 매출총이익	280,512,176,067	291,706,006,741
판매비와관리비	147,262,107,612	147,406,908,275
IV. 영업이익	133,250,068,455	144,299,098,466
기타수익	60,641,749,256	49,183,378,658
기타비용	94,674,159,790	39,519,856,866
금융수익	32,858,048,682	37,844,377,984
금융비용	86,046,338,281	92,443,575,61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6,029,368,322	99,363,422,629
법인세비용	16,612,496,889	21,894,282,013
VI. 당기순이익	29,416,871,433	77,469,140,616
VII.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047	2,771
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112	2,821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4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0 기	제 39 기
I. 당기순이익	29,416,871,433	77,469,140,616
II. 기타포괄손익	21,703,272,321	(61,183,394,36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1,107,133,489	(13,494,972,99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107,133,489	(13,494,972,996)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0,596,138,832	(47,688,421,37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0,139,380,581	(47,107,475,574)
파생상품평가손익	456,758,251	(580,945,797)
Ⅲ. 총포괄이익	51,120,143,754	16,285,746,249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4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5.01.01 (전기초)	167,455,885,000	276,205,595,328	(40,066,241,915)	54,112,450,604	775,720,700,974	1,233,428,389,99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77,469,140,616	77,469,140,61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7,107,475,574)		(47,107,475,574)
파생상품평가손익				(580,945,797)		(580,945,79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3,494,972,996)	(13,494,972,996)
<자본에 직접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41,999,147,800)	(41,999,147,800)
2015.12.31 (전기말)	167,455,885,000	276,205,595,328	(40,066,241,915)	6,424,029,233	797,695,720,794	1,207,714,988,440
2016.01.01 (당기초)	167,455,885,000	276,205,595,328	(40,066,241,915)	6,424,029,233	797,695,720,794	1,207,714,988,44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29,416,871,433	29,416,871,43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0,139,380,581		10,139,380,581
파생상품평가손익				456,758,251		456,758,25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107,133,489	11,107,133,489
<자본에 직접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22,470,093,500)	(22,470,093,500)
2016.12.31 (당기말)	167,455,885,000	276,205,595,328	(40,066,241,915)	17,020,168,065	815,749,632,216	1,236,365,038,69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0(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구분	(단위 : 백만원)		
	당기 (처분예정일:2017.3.17)	전기 (처분확정일:2016.3.18)	
I. 미처분이익잉여금		45,790	68,98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266		5,01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107		(13,495)
당기순이익	29,417		77,469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0,306	63,720
이익준비금	2,210		2,250
임의적립금	16,000		39,000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배당율) : 보통주 : 당기 최대주주 750원(15%) 기타주주 800원(16%) 전기 800원(16%) 우선주 : 당기 850원(17%) 전기 850원(17%)	22,096		22,47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484	5,266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40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9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40 기	제 39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2,755,306,489	357,638,375,43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91,456,693,888	435,058,721,016
이자의 수취	604,024,493	1,995,663,193
이자의 지급	(46,838,496,905)	(52,561,974,840)
배당금의 수취	12,090,621,255	10,481,047,482
법인세납부	(24,557,536,242)	(37,335,081,41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1,154,946,868)	(250,586,960,450)
단기대여금의 대여	(6,189,000,000)	-
장기대여금의 대여	(453,688,660)	(663,605,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266,238,521	349,549,096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5,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5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00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76,592,049,572)	(227,128,957,242)
유형자산의 처분	1,427,629,160	237,379,850
무형자산의 취득	(1,647,907,087)	(1,730,068,376)
무형자산의 처분	31,818,183	202,272,73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5,686,274,460)	(16,854,531,51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007,756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4,187,279,291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1,839,034,521		(263,559,235,477)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247,302,688,021		(3,871,280,807)	
장기차입금의 차입	50,000,000,000		142,3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54,719,460,000)		(359,989,940,000)	
사채의 발행	91,725,900,000		-	
배당금의 지급	(22,470,093,500)		(41,998,014,67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0,487,305		(4,117,593)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		163,489,881,447		(156,511,938,086)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922,287,224		159,434,225,310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6,412,168,671		2,922,287,224

- 주석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0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3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 박찬구 회장 및 그 특수관계자등이 당사 보통주식의 24.6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분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3.2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확정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1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소유주에 대한 분배

계획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매각예정(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 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 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상기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4.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6. 비과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과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과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

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7.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3-8.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

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 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니다..

3-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10 ~ 60년	차량운반구	5년
건축물	10 ~ 40년	공구와기구	5년
기계장치	8 ~ 30년	비품	4 ~ 5년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1. 차입원가

당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개발비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3.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13-1. 금융리스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기간비용)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13-2.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13-3.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개시일이나 약정의 재검토 시점에 약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액과 기타 대가를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리스 부분과 기타 요소 부분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3-1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제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1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8.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9.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0.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 종업원급여

3-21-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1-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3.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1-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3.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25.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25-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25-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25-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7-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세 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27-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

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9.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30.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당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하며,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각각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과 '충당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2017년 3월 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p>제29조 (임원의 보수 등)</p> <p>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p> <p>(신설)</p> <p>제37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등)</p> <p>1.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2.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제1항에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p> <p>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p> <p>4.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5.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6.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에 기재된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p>	<p>제2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p> <p>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며,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금액에서 제외된다.</p> <p>제37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등)</p> <p>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에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동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동일)</p> <p>3.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4. (현행과 동일)</p> <p>5. (현행과 동일)</p>	<p>보수한도에서 퇴직금 분리 명확화 (상장회사 표준정관 준용)</p> <p>의미 명확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함을 명시)</p>
--	---	--

<p>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 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 (손익계산과 처분) 당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 결산기 에 당기의 총수익으로부터 총비 용과 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를 순이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 도 이월금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익준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의 법정적립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당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의적립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p>제39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 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삭제 2012.03.23)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미 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4.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u>완성한다.</u></p> <p>제40조 (분기배당) 1. <u>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 로 한다.</u> 2.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 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p>	<p>6. (현행과 동일)</p> <p>제38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 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삭제) <p>제39조 (이익배당)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p> <p>4.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u>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 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 속된다.</u></p> <p>제40조 (분기배당) 1. <u>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u></p>	<p>이익금 처분 항목의 명확화(상장 회사 표준정관 준용)</p> <p>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귀속분 명시 (의미 명확화)</p> <p>의미 명확화 (상장회사 표준정관 준용)</p>
--	---	---

<p>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p>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p> <p>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p> <p>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p> <p>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p> <p>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p>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u>(신설)</u></p> <p>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5. 제8조의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p>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2. 제 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p> <p>3.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현행과 동일)</p> <p>4) (현행과 동일)</p> <p>5) (현행과 동일)</p> <p>6) (현행과 동일)</p> <p>7) <u>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u></p> <p>4. (현행과 동일)</p> <p>5. (현행과 동일)</p>	
--	--	--

--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용만	1933. 08. 29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용만	(현)(주)무궁화신탁 사내이사	(전)재무부장관 (현)(주)무궁화신탁 사내이사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용만	1933. 08. 29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장명기	1951. 08. 29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용만	(현)무궁화신탁 사내이사	(전)재무부장관 (현)(주)무궁화신탁 사내이사	없음

장명기	(현)(주)피델리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전)신한은행 부행장 (전)한국외환은행 수석부 행장 (현)(주)피델리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없음
-----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4)	5(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억원	60억원